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의5 하단의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. 다음 각 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다만 운전성능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.

별표3의5 하단에 비고 4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별표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: 4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별표3의5 비고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그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[별표3의5]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(제31조의8제1항 관련)

검사의 종류		검사유효기간
설치검사		1. 보일러: 1년. 다만, 운전성능 부분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.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개조검사	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설치장소 변경검사	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제사용검사	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계속사용검사	안전검사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: 2년
	운전성능검사	1. 보일러: 1년 2. 철금속가열로: 2년

비고

[별표3의5]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(제31조의8제1항 관련)

검사의 종류		검사유효기간
설치검사		1. 보일러: 1년. 다만, 운전성능 부분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.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개조검사	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설치장소 변경검사	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제사용검사	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: 2년
계속사용검사	안전검사	1. 보일러: 1년 2. 압력용기: 2년
	운전성능검사	1. 보일러: 1년 2. 철금속가열로: 2년

비고

1. ~ 3. <생략>

4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~ 나. <생략>

다. <신설>

5. ~ 6. <생략>

1. ~ 3. <현행과 같음>

4. 다음 각 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 운전성능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.

가. ~ 나. <현행과 같음>

다.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별표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: 4년

5. ~ 6. <현행과 같음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5 비교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그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적용한다.